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월 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3년 1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1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2) 책무 범위 확대(안 제4조)
- 3) 보훈영예수당 인상(안 제8조)
- 4) 지급신청 명확화(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우리 군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 국가보훈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보훈영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20만원 에서 월 25만원 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답을 보다 두텁게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훈영예수당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72백만원의 군 예산이 증액되고 매년 소요되는 만큼, 집행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 사업
8. 군과 관련된 선양 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10.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공원·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 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2. 공원·도로·주차장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
2. 통장사본 1부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

자로서의 요건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제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제4항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르게 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제11조(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9.>

1. 위장 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지급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착오 지급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 19.>

제12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b>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b>				
보훈(참전)등록번호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수당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내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평 창 군 수 귀 하</b>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b>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b>				
평창군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보훈(참전)등록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	<b>「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b>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없어 수당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b>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b>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 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b>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b>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수당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내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평 창 군 수 귀 하</b>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b>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b>				
평창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보훈(참전)등록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	<b>「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b>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없어 수당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b> <span style="float: right;">*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spa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b>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span>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spa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계법령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 조문 :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나. 비용 발생 요인 : 보훈영예수당 인상(20만원 ⇒ 25만원)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현황(603명)

(2022. 11.기준)

자 격 별		내 용	연령구간	인원(명)
계				603
본인 (7종)	소계			398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63~93	28
	공상군경	국가수호, 국민생명보호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4~86	45
	무공수훈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군인 중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60~94	14
	보국수훈자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간첩제포, 무기개발 등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	55~88	36
	참전유공자	6.25, 월남 전쟁에 참여한 사람	70~99	268
	공상공무원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49~76	3
	특수임무유공자	북파공작활동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	50~69	4
유족 (8종)	소계			205
	애국지사유족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의 유족	62,68	2
	전몰군경유족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유족	68~92	34
	순직군경유족	국가수호, 국민생명보호 등 직접 관련있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군인·소방경찰의 유족	54~96	23
	순직공무원유족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55~86	14
	공상군경유족	공상군경의 승계받은 유족	25~85	13
	무공수훈자유족	무공수훈자의 승계받은 유족	51~96	42
	전상군경유족	전상군경의 승계받은 유족	43~96	76
	특수임무유족	특수임무유공자의 승계받은 유족	69	1

나. 추계 결과 : 1,860백만원(620명\* × 25만원 × 12월) \* 예상 지원대상자

다. 재원조달 방안 : 해당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군비)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연락처	(033) 330 - 215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b>세 출</b>							
보훈영예수당		1,860,000	1,880,000	1,900,000	1,920,000	1,940,000	9,500,000
<b>자원 조달</b>							
자체 수입	지방세 (군비)	1,860,000	1,880,000	1,900,000	1,920,000	1,940,000	9,500,000